

研究報告

大學의 學科別 經費 分析에 관한 研究

- ◇ 이 연구論文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주관하에 1986 ◇
- ◇ 학년도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로 姜永三(國民大), ◇
- ◇ 朴鍾烈(慶北大), 裴鍾根(東國大), 尹正一(서울大), ◇
- ◇ 張龍國(檀國大) 고수와 玄京錫(本 協議會) 研究員에 ◇
- ◇ 의해 수행된 것이다. 紙面 관계상 그 내용을 전부 ◇
- ◇ 소개하지 못하고 目次 및 結論의 要約, 提言 부분 ◇
- ◇ 만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

□ 目 次 □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 2. 研究의 目的
- 3. 研究의 方法
- 4. 研究의 內容
- 5. 研究의 制限點

II. 理論的 背景

- 1. 大學教育費의 概念과 大學財政 構成
- 2. 大學 單位教育費의 算出方法
- 3. 大學教育費 分析에 관한 國內의 先行研究
- 4. 大學 納入金 算定方法과 納入金 策定

III. 外國의 大學財政 運營實態

- 1. 美國의 大學財政
- 가. 大學教育의 位置
- 나. 美國 教育財政의 總規模
- 다. 大學財政의 現況

2. 日本의 大學財政

- 가. 財政狀況
- 나. 運營收支의 狀況

IV. 大學財政의 財源別 分析

- 1. 大學財政의 財源別 分析
- 가. 全國 大學財政의 財源別 分析
- 나. 國立 大學財政의 財源別 分析
- 다. 私立 大學財政의 財源別 分析
- 2. 學校法人의 財源別 分析
- 3. 問題點

V. 大學財政의 支出別 分析

- 1. 大學校의 單位教育費
- 가. 項別 單位教育費
- 나. 目別 單位教育費
- 2. 單科大學의 單位教育費
- 가. 項別 單位教育費
- 나. 目別 單位教育費
- 3. 學科別 單位教育費
- 가. 項別 單位教育費
- 나. 目別 單位教育費
- 4. 問題點

VII. 大學 및 學科의 標準教育費 分析

1. 大學의 標準教育費 分析
 - 가. 單位教育費 決定變因의 設定
 - 나. 分析 및 論議
2. 學科別 標準教育費 分析
 - 가. 單位教育費 決定變因의 設定
 - 나. 分析 및 論議

VIII. 結論

1. 要約

이研究의 目的은 大學의 學科別 經費를 파악하는 데 있다. 具體的으로는 (1) 大學 財政의 財源 構成比를 알아 보고, (2) 大學의 財政 支出에 근거한 大學別, 專攻系列別, 學科別 學生 1人當 經費를 알아 보며, (3) 比較的 適正 水準의 學科當 教育 經費를 알아 보고, (4) 教育受惠에 따른 差等 登錄金制度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目的이 있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1) 먼저 先行研究들을 中心으로 관련 文獻을 수집·분석하였으며, (2) 총 115 개 國立 및 私立 綜合 및 單科大學을 대상으로 大學 財政의 財源別 構成比를 分析하였으며, (3) 총 25 개 綜合大學校의 資金運用計劃書에 기초하여 작성한 조사지를 分析하여 單科大學別, 系列別, 學科別 教育費를 추출하였으며, (4) 分析된 資料를 근거로 하여 上位 25%에 속하는 6 개 大學校의 단위 교육비 평균을 標準教育費로 삼았으며, (5) 총 10 개 종합 대학교를 방문하여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지를 보완하였으며, (6) 모든 分析은 전산 처리하였다. 分析對象 單科大學은 人文科學大學, 社會科學大學, 經商大學, 法政大學, 自然科學大學, 家政大學, 師範大學, 工科大學, 農科大學, 醫科大學, 齒科大學, 藥學大學, 音樂大學, 美術大學, 體育大學 등이었다.

分析對象 學科는 系列別 大學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英文學科, 經營學科, 物理學科, 土木工學科, 農學科, 醫學科, 藥學科, 音樂科, 美術學科, 體育學科, 教育學科, 科學教育科 등이

VII. 分析結果 要約 및 改善方向

1. 分析結果 要約
 - 가. 大學財政의 財源別 分析
 - 나. 大學財政의 支出別 分析
 - 다. 外國의 大學財政 運營實態
 - 라. 大學의 標準教育費 分析
2. 改善方向 및 方案

였다.

單位教育費 算出에 있어 師範大學의 人件費 중 40%는 교직 과목 수강자가 있는 大學에 배분하였고, 人文大學과 體育大學의 人件費 중 28%는 교양 과목 수강자가 있는 大學에 分配하였다. 大學 財政의 支出別 分析은 大學校別, 單科大學別, 學科別로 單位教育費를 分析하되 項目中 전체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人件費, 管理運營費, 學生經費, 施設費를 설립별로 分析하였다.

표준 교육비 분석에 있어서 單位教育費 決定變因들과 從屬變因인 단위 교육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重多回歸分析方法을 이용했다.

이研究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1) 大學 教育費의 概念과 大學 財政 構成의 國·私立間의 比較, (2) 大學 單位教育費의 算出 方法, (3) 大學의 適正 教育費 分析과 學點 및 教科單位 登錄金制度, (4) 納入金 算定 方法 등에 관련된 先行研究의 결과를 본 연구와 관련시켜 다루었다.

外國의 大學 財政 運營實態를 알기 위하여 美國의 (1) 公教育費의 規模, (2) 公·私立大學의 收入源, (3) 寄附金 現況, (4) 經常費 支出 内譯, (5) 獎學金 比率, (6) 學生當 教育費 등을 고찰하였다. 日本의 大學 財政 實態를 알기 위하여 日本의 私立大學을 中心으로 (1) 資產 現況 및 趨勢, (2) 收入源, (3) 收入의 學部別 比較, (4) 運營 支出 傾向, (5) 納入金 推移 등을 다루었다.

大學 財政의 財源別 分析에서는 (1) 韓國 大學의 總運營 收入 規模 및 主要 收入源의 比率, (2) 이의 規模別·設立別 비교, (3) 학교법인의 主要 收入項目 및 그 比率, (4) 이의 設立別 및 規模別 비교를 하였다.

大學 貢政의 支出別 分析에서는 (1) 學生 1人

〈표 1〉 專攻 및 學科群別 納入金 策定에 適用할 差異度(案)

群	差異度	系 列	學 科
I	1.00	人文, 社會, 師範(人文)	英文, 經營, 教育
II	1.15	農業, 藝能, 體育	農學, 美術, 音樂, 體育
III	1.35	理學, 藥學, 工學, 師範(自然)	藥學, 物理, 土木, 科學教育
IV	2.15	醫學	醫學

當 平均教育費, (2) 項目別 單位教育費의 比率, (3) 項目別 構成比, (4) 單科大學別 學生 1人當 教育費, (5) 教育費 還元率, (6) 系列別 納入金 差異度, (7) 大學間 學生 1人當 項目別 教育費 偏差, (8) 學生 1人當 項目別 教育費, (9) 學科別 單位教育費, (10) 教育費 還元率, (11) 學科別·項目別 教育費에 관하여 밝혔다.

大學의 標準教育費 分析에서는 (1) 單位教育費와 相關이 큰 變因, (2) 所在地別 單位education費의 差, (3) 單位education費의 項目別構成比, (4) 學科의 單位education費에 관계된 變因, (5) 學科別 標準education費, (6) 學科當 標準education費의 機能別 配分比 등을 알아 보았다.

끝으로 이 研究의 結果를 바탕으로 大學財政運營의 改善 方向으로 (1) 大學財政運營의 自律化, (2) 標準education費의 增大, (3) 大學財源確保의 多樣化, (4) 大學財政運用의 效率化, (5) 納入金 差等化로 제시하고 각 方向에 따라 몇 가지 具體的 方案을 열거하였다.

2. 提 言

研究의 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提言한다.

첫째,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 教授 1人當 學生數가 감소되어야 하며, 必要施設 및設備가 확보되어야 하고, 教育方法이 改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大學教育에서 해결되어야 할 課題이고 이의 解決을 위해서는 教育投資가

上向 調整되어야 한다.

둘째, 教育投資의 上向 조정을 위해서는 大學財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學生負擔比率을 상대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現水準보다 더 引上되는 教育費는 政府支援이나 세제 혜택을 통한 기부금 형식으로 충당하여 상대적으로 學生負擔率을 줄여야 한다.

세째, 大學의 納入金策定은 教育費還元率에서 나타난 學科間 내지는 系列間의 不均等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還元率에 근거한 類似系列群에 따라 納入金에 差異를 두어야 한다.

네째, 納入金의 差異는 現實的 適正 education費인 標準education費에 근거한 差異度에 기초하여 위의 〈표 1〉과 같이 群別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다섯째, 納入金策定은 個別大學의 自律에 맡기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設立別(國·公·私立別), 地域別(서울/地方), 系列別, 學科別, 教育條件別(예: 교수 1인당 학생 수 차이)로 다르게 나타나는 單位education費 및 標準education費에 관한 資料를 提示하고 이를 活用도록 권장한다.

여섯째, 現行 文教部指針에 의한 大學財政支出構成比는 學校의 實情이나 地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大學이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각 大學은 財政豫算의 編成과 執行 그리고 그 評價를 擔當하는 大學財政委員會(假稱)의 구성이 바람직하다. *